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필요한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694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드는 기간을 점용·사용허가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점용·사용허가 등의 처리절차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법령의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연안정보도(배타적”을 “연안정보도[배타적”으로, “해도를 말한다)”를 “해도(海圖)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2인”을 “(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나목 중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서[”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락지 해당 여부”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락지에 해당하는지”로, “가액이”를 “가액(價額)이”로, “적은 경우에는”을 “적으면”으로, “고려한”을 “고려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락지 해당여부”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락지에 해당하는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하”를 “않”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을 “않고는 묘지의 적절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하”를 “않”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관로”를 “관로(管路)”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였을”을 “했을”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였을”을 “했을”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각각 “기록·관리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하는 때”를 “할 때”로, “매 1년”을 “1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이를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 받거나”를 “승인받거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를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示方書)]”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건축물:「기술사법」 제6조”를 “건축물:「기술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검토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알리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아니함을 통보하는”을 “않음을 알리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리계산서”를 “수리(水理)계산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2인”을 “(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립관련”을 “매립 관련”으로, “동의하였음”을 “동의했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를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확보하였음”을 “확보했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부관”을 “부관(附款)”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1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를 “추첨으로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였을”을 “했을”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인”을 각각“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세공과금 및”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한다.

제35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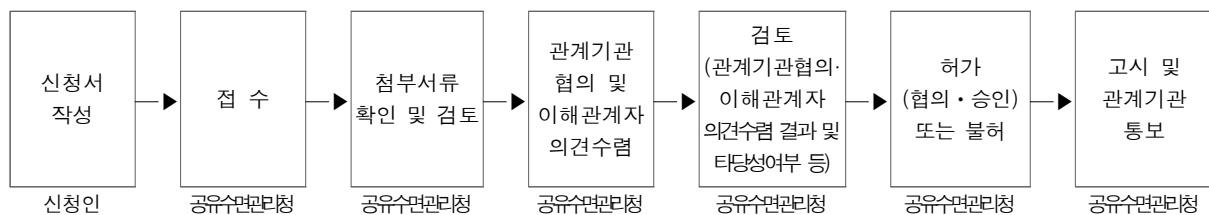
제40조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하였을”을 “했을”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각각 “기록·관리해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유의사항 제2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뒤쪽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u>통지하여야</u> 한다.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 ----- ----- ----- ----- ----- ----- ----- ----- ----- <u>통지해야</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2. (생략)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2. (현행과 같음) 3. -----

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u>연안정보도</u>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u>해도를 말한다</u>)	----- <u>연안정보도</u> [배타적 -----
4. ~ 7. (생략)	----- <u>해도</u> (海圖)를 말한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u>인</u>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7. (현행과 같음)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u>둘</u> -----
가. (생략)	-----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u>감정평가서</u>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것을 <u>말한다</u> }	9. -----
다. (생략)	-----
③·④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① 영	나. -----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	-----
	----- <u>감정평가서</u> [-----

	----- <u>말한다</u>]
	다.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① ---

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
 로 구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
 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
 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
 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 2. (생략)

②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
 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
 다.

1.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
 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
 우

2. 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락지에 해당하는지-----

----- 가액(價額)이

-- 적으면 -----

----- 고려할 -----

-----.

1. 2.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
락지에 해당하는지-----

-----.

1. -----

----- 않-----

--

2. -----

----- 않고는 묘지의 적절
한 -----

경우	--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u>아니하고</u> 는 건축물이나 그 밖 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3. ----- ----- ----- <u>않</u> ----- ----- -----
제6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소 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 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제6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의 면제)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유수면관리청이 <u>관로</u> 의 형 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 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 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 위	2. ----- <u>관로(管路)</u> ----- ----- ----- ----- --
제7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	제7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

경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경신청 등) ① -----

--- 제출해야 ----. -----

----- 않는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 했을 ---

----- 발급해

야 -----.

제8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
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관리) ① 공유수면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제4
항 및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
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
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
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생 략)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

----- 제출해야 -----.

제10조(기록·관리) ① -----

----- 했
을 -----

----- 기록·관리해야 -----.

② -----

----- 기록·
관리해야 -----.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의 징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14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

----- 할 때 -----

----- 1년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

----- 시작 ----- 징수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한 사항은 -----
-----.

제14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신고) -----

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 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생략)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 제출
해야 ----.

제15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신고) ① -----

-- 승인받거나-----

----- 제
출해야 ----.

1.·2. (현행과 같음)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示方書)----- 포
함한다]

4. (현행과 같음)

5. -----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
을 말한다.

가. (생략)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
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
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7.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에 관한 실시
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
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

가. (현행과 같음)

나. ----- 건축
물: 「기술사법」 제6조--

6.·7. (현행과 같음)

② -----

----- 의뢰
해야 ----. -----

----- 검토
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③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
인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수면관리청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
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
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
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
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
3호서식에 따른 점용·사용 실
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
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
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
항 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
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
용·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
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③ -----

----- 통
보해야 ----.

④ -----

----- 발
급해야 ----.

제16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
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① -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
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
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
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
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사
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
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
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
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 제출해야 -----.

② -----

----- 발급해야 -----.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첨
부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제
출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
청) ① -----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
복 의무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
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
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
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
으로 밝혀야 한다.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 반영 요청) ① 법 제23조제1
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
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제출해야 ----.

1.·2. (현행과 같음)

② -----

확인해야 -----.

③ -----

알리는 경우에
는 원상회복-----

않음을 알리는 --

-----.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 반영 요청) ① -----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

---- 제출해야 ----.

--- 않는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확인해야 -----
-----.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

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24조(매립면허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 9. (생 략)

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매립면허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첨부해야 ----.

1. ~ 6. (현행과 같음)

7. 수리(水理)계산서-----

8. · 9. (현행과 같음)

10. -----

-----.

---- 않을 -----.

11.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
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
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
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 (둘) —

12. (현행과 같음)

③ -----

--- 확인해야 ----.

④ -----

----- 발급해야 -----.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첨부해야 -----.

1. ~ 7. (현행과 같음)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 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생략)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생략)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 11. (생략)

③ (생략)

----- 첨부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

매립 관련-----

----- 동의했음-----

5. (현행과 같음)

6. -----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工區)]-----

--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8. -----

확보했음-----

9. ----- 부관(附款)-----

10. · 1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 한다.

⑤ (생략)

제30조(권리·의무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

④ -----

----- 첨부해야 -----

----- 않는
다.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권리·의무의 양도신고 등) ① -----

----- 제출해야 -----
-----.

② -----

----- 발급

하여야 한다.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
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
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
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생략)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
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
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
라 공고를 하었을 때에는 그 공

해야 ----.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

----- 제출해야 -----.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첨부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 추첨으로 지정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했을 -----

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
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
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
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
되, 재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
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
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
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
정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
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

---- 통보해야 -----.

④ -----

----- 둘 -----

---- 둘 -----

---.

⑤ -----

---- 통보해야 -----.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
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첨부해야 -----.

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 4. (생략)

5.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생략)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
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
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
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
청) ① 법 제53조제3항 및 제4
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
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각종 세금과 공
과금, -----

6. (현행과 같음)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
전) -----

----- 해야 -----.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
청) ①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① (생략)

② -----

----- 확인해야 -----.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① -----

----- 제출해야 -----.

② -----

----- 확인해야 -----.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② (생략)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

② -----

----- 첨부
해야 ----.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관리)

① -----

----- 했을 -----

----- 기록
· 관리해야 ----.

② -----

----- 기
록· 관리해야 ----.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u>하여야</u> 한다. 1. 매 반기별로 <u>제출하여야</u> 할 사항: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2. 매 분기별로 <u>제출하여야</u> 할 사항: 방치선박등의 현황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실적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1. 2. (생략)	----- ----- ----- ----- ----- -----<u>해야</u>----- ---. 1. ----- <u>제출해야</u> ----- ----- --- 2. ----- <u>제출해야</u> ----- -----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u>해야</u>----- ---. 1. 2. (현행과 같음)
--	--